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사 비협조 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70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6. 4. 28.
3. 회 부 일: 2026.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

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호·제5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호·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72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u><신설></u>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73조(벌칙) ① -----

현행	개정안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등을 통하여 조사 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

□ 개정안은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관련 법 위반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자료와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유출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한편, 형벌체계상의 균형 측면에서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입법례 >

제명 및 벌칙 규정	의무 규정	위반내용	처벌 수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제11호의3, 제12호 ²⁾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³⁾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⁵⁾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25조 제6호, 제7호 ⁴⁾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호~제8호 ⁶⁾	제29조의3 (위반행위의 조사 등) ⁷⁾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조사 비협조 시 벌칙 규정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조사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입법례 벌칙 규정 등을 토대로 조사 비협조 행
위에 대한 전체적인 형벌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08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
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6. 제2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 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
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농가, 계열화사업
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
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